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7년 2월 13일

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

나. 제안이유

-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7개 통·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 7명 증원
 - 당초 : 642개 통·리장(통장 470, 리장 172)
 - 변경 : 649개 통·리장(통장 473, 리장 176)
 - 고아읍 3, 산동면 1, 공단1동 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42명에서 고아읍 3명, 산동면 1명, 공단 1동 3명 등 총 7명이 증가된 649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7개 통·리 증설에 따른 고아읍 3명, 산동면 1명, 공단1동 3명의 통·리장 7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